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3. 제안이유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학교 폐지

1)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초등학교 폐지 (휴원중)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학생수 감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소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및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을 남일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현재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이 없어 휴원 중이며,
- 두산분교 재학생은 3명(2010.6.20.현재)으로 통학구역 내 더 이상 학생 증가요인이 없는 등
-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